

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,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급여 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본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모든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 (이용 절차)

- ①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받고,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후 본 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계약은 공단에서 발급한 「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」를 근거로 하여 체결하며,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.
-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 기관이 제시하는 본인부담금 및 이용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.

제4조 (급여의 종류)

본 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.

1. 재가급여: 복지용구

제5조 (본인부담금 납부)

- ① 수급자는 법령에서 정한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익월 초 고지하며,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연속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, 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
제6조 (이용 제한 및 중지)

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기관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
1. 본인부담금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
2. 서비스 제공에 현저히 협조하지 않아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

제7조 (급여 내용의 변경)

- ① 수급자의 상태 변화로 서비스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, 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공단에 등급 재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 (기록 관리)

- ① 본 기관은 모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을 법령에 따라 기록·보관한다.
- ② 기록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,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계 서식에 따라 작성·관리한다.

제9조 (기관의 책임과 수급자의 의무)

- ① 기관은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공단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관에 협조하여야 하며, 부정수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제10조 (부칙)

이 규정은 2025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

복지용구 사업소 용 원 의 료 기